

인지세 안내

오피스텔 공급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,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/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과세대상	부동산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
납부기한	[분양계약] → 계약체결일의 다음달 10일 / [전매] → 매매계약 작성일 다음달 10일
방문 발급	우체국, 은행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후 인지세 납부 ※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현금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및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
온라인 발급	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접속 →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→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→ 구입 및 결제 → 전자수입인지 출력

※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(매수자 혹은 수분양자)와 공급사업자(연대하여) 공동 납부합니다. 공급사업자 부담분 50%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는 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.
※ 인지세 납부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 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, 계약자는 납부 기일 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인지세액 안내

구분	세액구간	세액		오피스텔 공급계약
		전체	계약자 부담 (50%)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)	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	2만원	1만원	-
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4만원	2만원	-
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만원	3만5천원	-
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7만5천원	84㎡ (오피스텔)
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5천원	

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

1.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>) 사이트 접속 또는 인터넷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3. 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



① 로그인 ② 구매 클릭

4. 입력 및 결제

5. 출력

4. 입력 및 결제

- 용도: 인지세 납부
- 과세문서 종류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금액: 세액구간에 해당하는 금액
- 건수: *1 입력
- ※ 공급계약서용 1건 필요

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

※ 인지세법,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·개정 등에 따라 납부금액,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